

[별지 제13호 서식]

공동수급표준협정서(분담이행방식)

제1조 [목적]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, 경영, 기술능력,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,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,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.

1. 계약건명 :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
2. 계약금액 : 낙찰금액
3. 발주자명 : 서울특별시 성북구

제2조 [공동수급체] 공동수급체의 명칭, 사업소의 소재지,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.

1. 명 칭 : (주)피엠에이엔지니어링
2. 주사무소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41(논현동) 우암빌딩 3층
3. 대표자성명 : 유 형 식

제3조 [공동수급체의 구성원]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.

1. (주)피엠에이엔지니어링
(대표자: 유 형 식 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41(논현동) 우암빌딩3층)
2. (주)지랩건축사사무소
(대표자: 강 해 천 소재지: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24, 3층)

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(주)피엠에이엔지니어링 로 한다.

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,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.

제4조 [효력기간]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,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. 다만,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.

제5조 [의무]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,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.

제6조 [책임]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.

제7조 [하도급]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.

제8조 [거래계좌]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III -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,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.

1. (주)피엠에이엔지니어링(공동수급체대표자) : IBK기업은행,
계좌번호 068-072274-01-011, 예금주 (주)피엠에이엔지니어링
2. ㈜지랩건축사사무소 : 우리은행,
계좌번호 100-203-435948, 예금주 주식회사지랩건축사사무소

제9조 [구성원의 분담내용]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[예시]

1. (주)피엠에이엔지니어링 : 80%
2. (주)지랩건축사사무소 : 20%

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.

1.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
2.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, 해산,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

제10조 [공동비용의 분담]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.

제11조 [구성원상호간의 책임]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.

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,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12조 [권리, 책임의 양도제한]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13조 [중도탈퇴에 대한 조치]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.

1.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
2. 파산, 해산,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

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, 해산,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,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. 다만,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, 실적,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4조 [하자담보책임]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.

제15조 [운영위원회]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.

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.

2018년 6월 25일

(주)피엠에이엔지니어링

대표 유형식

(주)지랩건축사사무소

대표 강해천





사업자등록증

(법인사업자)

등록번호 : 211-88-84419

법인명(단체명) : 주식회사 피엠에이엔지니어링

대표자 : 유형식

개업년월일 : 2012년 10월 09일 법인등록번호 : 110111-4973205

사업장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41, 3층(논현동, 3층)

본점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41, 3층(논현동, 3층)

사업의종류 : 업태 서비스
출판업
서비스

종목 엔지니어링용역
편집, 인쇄물, 서적
건축설계

교부사유 :

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: 여 () 부 ()

전자세금계산서 전용메일주소 : pma2012@hometax.go.kr

2015년 03월 06일

강남세무서장



국세청



